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개정된 「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18160호, 2021. 5. 18. 공포, 2021. 11. 19. 시행)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·용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 제한 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지원금 등의 회수통지 등)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3조(지원금 등의 회수통지 등)</u>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 ②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 또는 융자금이 제한되는 기 간은 별표와 같다.	<u>제3조(지원금 등의 회수통지 등)</u>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